

부속서 II

파나마의 유보목록

주해

1. 이 부속서의 파나마 유보목록은 제9.13조(비합치 조치) 및 제10.6조(비합치 조치)에 따라, 파나마가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, 하위분야 또는 행위를 규정한다.
 - 가. 제9.3조(내국민 대우) 또는 제10.2조(내국민 대우)
 - 나. 제9.4조(최혜국 대우) 또는 제10.3조(최혜국 대우)
 - 다. 제10.5조(현지주재)
 - 라. 제9.9조(이행요건)
 - 마. 제9.10조(고위경영진 및 이사회), 또는
 - 바. 제10.4조(시장접근)
2.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.
 - 가. **분야**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.
 - 나. **하위분야**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.
 - 다. **관련의무**는 제9.13조(비합치 조치) 및 제10.6조(비합치 조치)에 따라 유보된 분야,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에서 언급된 의무(들)를 명시한다.
 - 라. **유보내용**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, 하위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. 그리고
 - 마. **기존의 조치**는, 투명성의 목적상,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,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는 기존의 조치를 적시한다.
3. 제9.13조제2항(비합치 조치) 및 제10.6조제2항(비합치 조치)에 따라, 유보항목의 관련 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분야, 하위분야 및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.
4. 유보항목의 해석에서, 그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고려될 것이다. 유보내용 요소는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.
5. 이 협정의 목적상, 파나마는 다음을 양해한다.

파나마 관할권 수역에서의 어업 및 관련 활동은 서비스로 간주되지 아니하여 제10장(국경 간 서비스무역)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부속서 I 및 II에 기재될 필요는 없다.

1. 분야	사회서비스
하위분야	
관련의무	<p>시장접근(제10.4조) 내국민 대우(제9.3조 및 제10.2조) 최혜국 대우(제9.4조 및 제10.3조) 현지주재(제10.5조) 이행요건(제9.9조)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(제9.10조)</p>
정부수준	중앙
유보내용	<p><u>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</u></p> <p>파나마는 법 집행 및 교정 서비스, 그리고 다음의 서비스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 또는 유지되는 사회 서비스인 경우에 한정하여 그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: 소득 보장 또는 보험, 사회 보장 또는 보험, 사회 복지, 공교육, 공공훈련, 보건 또는 보육.</p>

2. 분야	원주민 집단 및 소수 민족
하위분야	
관련의무	내국민 대우(제9.3조 및 제10.2조) 최혜국 대우(제9.4조 및 제10.3조) 현지주재(제10.5조) 이행요건(제9.9조)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(제9.10조)
정부수준	중앙
유보내용	<p><u>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</u></p> <p>파나마는 외국인 투자자 및 그 투자, 또는 외국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회적 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수집단 또는 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원주민 집단에 부여된 권리 또는 특혜를 부인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</p> <p>이는 세로 콜로라도(Cerro Colorado) 또는 노베 부글레 지역(Ngobe Bugle Region) 및 그 밖의 지역 관할권 내에 있는 그 밖의 모든 장소에서 광산의 탐사 및 개발을 개시, 촉진, 승인하지 아니한다는 법령 제30호(2011.2.22)의 파나마 정부의 약속을 포함한다.</p>

3. 분야	파나마 운하 관련 사안
하위분야	
관련의무	<p>시장접근(제10.4조) 내국민 대우(제9.3조 및 제10.2조) 현지주재(제10.5조) 이행요건(제9.9조)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(제9.10조)</p>
정부수준	중앙
유보내용	<p><u>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</u></p> <p>1. 파나마는 파나마 운하 및 외국인 투자자와 서비스 공급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반환지역의 관리, 행정, 운영, 유지, 보존, 현대화, 이용, 개발 또는 소유에 관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</p> <p>2. 파나마 운하는 적절한 수로, 그리고 정박지, 부두 접안지 및 입구, 육지 및 해양, 호수 및 하천, 수문, 부수 댐, 부두 및 수해방지구조물을 포함한다.</p> <p>3. 경제재정부 반환자산관리국(구 대양간 지역사업청)의 관리 하에 있는 반환지역은 1977년 「파나마 운하 조약」 및 그 부속서(토리호스-카터 조약)에 따라 파나마 공화국으로 반환된 토지, 건물 및 시설과 그 밖의 물품을 포함한다.</p>

4. 분야	모든 분야
하위분야	
관련의무	현지주재(제10.5조) 내국민 대우(제9.3조 및 제10.2조)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(제9.10조) 이행요건(제9.9조)
정부수준	중앙
유보내용	<p><u>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</u></p> <p>1. 파나마는 기존의 공기업 또는 기존의 정부기관의 지분 또는 자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하는 경우, 다음에 대하여 금지하거나 제한할 권리를 유보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서비스 제공 나. 그러한 지분 또는 자산에 대한 소유권 다. 그러한 지분 또는 물품 소유자의 기술적 역량, 재정적 역량 및 경험, 그리고 라. 그 결과로 발생한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통제 <p>2. 그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관하여, 파나마는 고위경영진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국적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.</p>

5. 분야	건설서비스
하위분야	
관련의무	내국민 대우(제10.2조) 현지주재(제10.5조)
정부수준	중앙
유보내용	<p><u>국경 간 서비스무역</u></p> <p>파나마는 거주, 등록 또는 그 밖의 현지주재 요건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, 또는 파나마 법 및 사적인 계약상 의무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재정보증을 요구할 권리를 유보한다.</p>

6. 분야	어업 및 어업 관련 부수 서비스
하위분야	
관련의무	내국민 대우(제9.3조 및 제10.2조) 최혜국 대우(제9.4조 및 제10.3조)
정부수준	중앙
유보내용	<u>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</u> 파나마는 파나마 관할권 내 수역에서 어업 및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한 투자, 소유 또는 지배 그리고 운영에 대한 요건에 관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

7. 분야	모든 분야
하위분야	
관련의무	최혜국 대우(제9.4조 및 제10.3조)
정부수준	중앙
유보내용	<p><u>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</u></p> <p>1. 파나마는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서명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</p> <p>2. 파나마는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후 서명된 중미 통합 체제의 모든 협정에 따라 중미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</p> <p>3. 파나마는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후 서명되는 다음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</p> <p> 가. 항공</p> <p> 나. 수산</p> <p> 다. 해난구조를 포함한 해상 사안, 또는</p> <p> 라. 철도 운송</p>

8. 분야	운송서비스
하위분야	도로 운송 서비스
관련의무	시장접근(제10.4조) 내국민 대우(제9.3조 및 제10.2조) 현지주재(제10.5조) 이행요건(제9.9조)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(제9.10조)
정부수준	중앙
유보내용	<p><u>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</u></p> <p>1. 파나마는 정기 여객운송, 비정기 여객운송, 운영자를 포함하는 상업용 화물차량 임대 서비스 및 버스터미널 서비스와 관련된 서비스 및 투자 제공을 제한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</p> <p>2. 파나마 국경 내의 육로를 통한 카보타지는 국내 운송업체들을 위하여 유보된다.</p>

9. 분야	모든 분야
하위분야	
관련의무	내국민 대우(제9.3조) 이행요건(제9.9조)
정부수준	중앙
유보내용	<p><u>투자</u></p> <p>파나마는 투자의 설립 또는 인수와 관련하여 국내 규정에 따른 공공질서 유지에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할 권리를 유보한다. 다만, 파나마는 즉시 다른 쪽 당사국에 그러한 조치를 채택하였고 그 조치가 다음과 같다는 서면통지를 제공하여야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적용 가능한 법에 규정된 절차적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. 나. 그 투자가 사회의 근본적 이익에 대하여 진정하고 충분한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채택되거나 유지된다. 다.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. 라.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아니한다. 그리고 마.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비례한다.